

제 2962호

화순군공보

발행일 : 2020년 8월 20일

발행인 : 화순군수

발행처 :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

화순군 기획감사실

차 례

고 시

화순군 고시 제2020-121호	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	1
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공 고

화순군 공고 제2020-1280호	화순백신산업특구 기간 연장에 따른 특구계획변경안 공고	2
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·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회 략

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, 제25조제2항에 따라 우리군 소재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. 8. 19.

화 순 군 수



○ 도로명주소 :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강쟁길 28-23외 13건

종전 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 사유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 고
(※부여 5건, 폐지 9건)		붙		임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(☎ 061-379-3454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
『화순 백신산업 특구』 기간 연장에 따른 특 구 계 획 변경(안) 공 고

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7조 제1항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순 백신산업특구 기간 연장에 따른 특구 계획 변경(안) 등 자료의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특구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8월 13일

화 순 군 수



1. 특구명칭 : 화순백신산업특구
2. 특화사업자 : 화순군수, 화순전남대병원장
3. 특구위치 :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원
4. 특구면적 : 941,731.5m²
5. 총 사업비
 - (기존) : 4,411.1억원(국 1,975.25 도 599.525 군 729.825 민 1,106.5)
 - (변경) : 4,564.17억원(국 2,301.27, 도 557.025, 군 851.325, 민 854.55)
 - (증감) : 153.07억원 (3.5% 증액)

6. 특구기간

- (기존) 2010년 ~ 2020년 (10년간)
- (변경) 2010년 ~ 2023년 (3년 연장)

7. 특구 계획변경(기간 연장 및 사업 추가) 필요성

- 화순백신산업특구 지정으로 화순군은 생물의약품단지화 화순전남대병원등 백신·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백신산업의 메카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,
- 특구 변경을 통해 백신·생물의약품산업의 진행중인 인프라 구축사업과 계획중인 신규 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, 일자리 창출, 건실한 기업유치로 글로벌 첨단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며,
- 화순백신특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규제특례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생물의약품산업 육성과 신규 특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기간 연장 과 사업추가 등 변경이 필요함.

8. 특화 사업 내용

-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
 -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
 - 천연물의약품GMP생산시설구축사업
 - 생물의약품산업단지조성 및 생물의약품센터지원사업
 - 생물의약품전임상연구소 조성사업
 - 면역세포치료산업화기술플랫폼 구축사업
 - 국가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사업
 - 바이오헬스융복합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
 -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
 - 질환동물기반세포치료제효능평가플랫폼 구축
 - 첨단바이오의약품사업화지원역량강화지원사업
 - 줄기세포유래바이오신약소재개발상용화
 - 혁신형AI기반바이오임상지원센터 구축

-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
 -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
 - 노인전문병원 건립
 - 혁신형의사과학자공동연구사업
 - 전남대병원 개방형 의료 혁신센터 건립 사업

9.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

- 규제특례법 제31조(「출입국관리법」에 관한 특례)
 - 백신산업 특구내 외국인 전문 인력의 체류기한 연장
- 규제특례법 제34조(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에 관한 특례)
 - 옥외광고물 설치와 표시기준을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
- 규제특례법 제42조(「의료법」에 관한 특례)
 - 특구내 특화사업자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
- 규제특례법 제44조(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)
 - 특구내 건폐율·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정함
- 규제특례법 제55조(「특허법」에 관한 특례)
 - 특화사업과 관련된 제품의 특허출원 우선 심사
- 규제특례법 제60조(「지방재정법」에 관한 특례)
 -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특구 관한 지자체가 하는 특화사업에 대하여 지방 재정투·융자 심사 면제

10. 특구계획(안)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

-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: 2020. 8. 13.(목) ~ 9. 3.(수), 21일간
-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
 - 열람 장소 : 화순군 일자리정책실, 화순읍 행정복지센터, 능주면 행정복지센터
 - 의견제출장소 : 화순군 일자리정책실 생물산업팀
-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문의 : 화순군 일자리정책실 생물산업팀(061-379-3171)

